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사업구조화 단계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이유

|| 질 의 ||

-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 회 신 ||

- 사업예산서는 예산서상에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만 표시되며 이것은 성과관리 극대화를 위해 집행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편의 도모, 시민단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함

2. 조직별로 사업구조화가 서로 다를 경우

Ⅰ 질 의 Ⅰ

- 조직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화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Ⅰ 회 신 Ⅰ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은 우선 해당 사업부서(실과)에서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므로 조직별로 구조화가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것임

Ⅱ. 재정계획

1. 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수정 가능여부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수정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성 있고 국가계획 및 관련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 재정의 조달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수립하고 지방의회에는 수립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장이 수정하여야 할 것임

Ⅲ. 예산의 편성

1. ○○도 카지노 이익금 배분수입의 세입예산 편성과목

Ⅰ 질 의 Ⅰ

- ○○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이익금을 전국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
- ○○도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이익금을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세입예산 과목 중 어떤 과목으로 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자치단체의 세입은 그 활동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과목에서는 이를 장, 관, 항, 목별로 분류하고 장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분류하는 등 세입의 활동 유형에 따라 이를 계리하여야 할 예산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카지노이익금 배분액의 세입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스스로 결정하되, 기타잡수입(228-09) 과목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카지노 이익금으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2. 주민부담액의 예산편성 가능여부

■ 질 의 ■

- 어민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어민의 동의나 위임없이 시·군이 임의대로 예산에 편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액입찰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아닌 현금으로 국가가 당사자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 회 신 ■

-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상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중 세입예산이란 세입목표를 예측한 견적으로 반드시 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정액인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반영 후 주민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결산시 국비 내지 시도비는 불용처리가 되어 반납되어야 할 것이므로 세입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검토 해야 할 것이며
- 또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 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계약이 가능할 것임
-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임

3.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지방비 분담

■ 질 의 ■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군장정(예비군)의 작전용 개인장구 수통(피) 및 요대, 응급처치 세트, 서바이벌 게임 장비예산 등을 반드시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하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에 국가기관 및 예비군부대가 소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나 지방비 부담 규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자율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 할 사항임

4.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한계

【 질 의 】

- 지방재정 형편상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공사비 30억원의 “갑”이란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광역시에서 구비부담 조건 없이 총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다면 이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보아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위의 질의한 내용은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다라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의 내용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보완통보 재경13310-759, 1999. 8. 2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성립전 예산사용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므로 기 회시한 바와 같이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교부한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함
- 다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의 목적은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하나 국가 및 시·도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전액 교부한 경비에 대하여 이를 조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편성전에 미리 집행하고 사후 추경편성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연차별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부담이 소요된다 하여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5. 성립전 예산의 의회 삭감의결

Ⅰ 질 의 Ⅰ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규정에 따라 관련 경비를 사용하고 이를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당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삭감의결 할 경우 적법성에 대하여

Ⅰ 회 신 Ⅰ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서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된 예산의 운영상황에서 당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①용도가 지정되고, ②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한 것으로
 - 당해 경비를 교부받은 자치단체는 교부된 목적대로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집행된 경비를 삭감할 수 없음

- 또한 동 단서조항 후미에 성립전 사용경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립전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절차적 조항으로 성립된 사용 경비는 이를 반드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당위성을 선언한 것임

○ 따라서 ○○군이 신청한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도가 용도와 금액을 정하여 교부내시 하였고, ○○군은 교부된 용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집행한 경비에 대하여는 ○○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시 이를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I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시 분할처리 가능여부

■ 질 의 ■

-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급여에서 분할 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재정법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으로 보아 채권에 대한 분할은 할 수 있겠으나

○ 여기에서의 채권의 의미는 정상적인 채권의 경우로 사료되며, 기 수령한 급여의 초과분에 대한 환수액을 분할하여 회수의 경우는 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

2.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Ⅰ 질 의 Ⅰ

- 기간제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1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사, 노무관리 참고자료(’07.8)」에 의하면
〈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 55조, 영 제30조)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휴일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유급휴일 근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고 무급 휴일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휴일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각각 50%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경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해야 할 사항임

3. 원고료 지급대상

Ⅰ 질 의 Ⅰ

- 지방농촌지도기관이 수행하는 농업인, 지도직공무원의 전문기술 교육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13310-878호(2000. 7. 14) 로 특정인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교재를 개발한 경우에 교재집필자에 대해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회신한 내용 중 “특정인의 범위”에 자체강사도 포함되는 지

【 회 신 】

- 지방농촌지도기관이 수행하는 농업인, 지도직공무원 전문기술교육시 자체 강사에게 원고료 지급문제는 재정 13310-878(2000. 7. 14)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 자체강사가 자발적으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여 직접 강의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고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 이와는 다르게 지방농촌지도기관이 전문기술교육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교재를 개발한 경우에는 교재집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지급이 가능함을 회신한 것임
- 상기한 회신내용 중 “특정인”이라함은 교재를 발간하는 기관이 교재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작성을 의뢰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개념속에 자체강사를 특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재집필 의뢰 대상에 자체강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기관이 교재편찬의 목적과 내용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4.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여부

【 질 의 】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직급별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여비 등은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외여비 및 민간인국외여비도 예산집행품의 생략에 해당되는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부칙에 의하여 2006.5.15. 예산집행품의 부터 이 기준에 의하도록 한 바,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를 포함하고 있어 동 기준 II-8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 집행시 회계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 품의단계에서 사전협의하도록 하였으며,
- 민간인 국외여비의 예산과목은 일반보상금 과목이므로 예산집행품의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장 모임 회비납부 가능여부

Ⅰ 질 의 Ⅰ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용되는 제경비인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관내 기관장 모임의 월정액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사용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경비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에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유관기관의 모임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적인 모임으로 본다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행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V. 예산의 변경 관리

1. 예산의 이월제도 개념

Ⅰ 질 의 Ⅰ

- 예산의 이월제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Ⅰ 회 신 Ⅰ

- 예산의 이월제도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명시이월된 민간자본 이전예산 기금 적립 가능여부

■ 질 의 ■

- 새마을단체의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해 2006년도 민간자본이전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새마을건립기금설치 조례를 제정 새마을단체로 교부한 후 반납 절차를 거쳐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의회의결로 확정된 것으로 명시이월된 자본보조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함

3. 명시이월사업비의 의회의결 시점

■ 질 의 ■

- 1999년도 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할 경우에, 의회 의결시점을 '99년도 정리추경예산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

회 신

-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시점은 당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연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따라서 '99년도의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99년도내의 정리추경시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추경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의결을 득하여야 할 것임

4. 사고이월 확정전 집행 가능여부

질 의

-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 하려고 하는 경우 회계연도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부득이 1월에 대가 지급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1월에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가능한지, 그 잔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지

회 신

-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의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업무과장에게 제출함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및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도폐쇄기간인 1월에 지난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원인행위와 지출은 안됨

5. 계속비 사업의 의결시점

질 의

- 지방의회의 의결시점에 대하여 2009~2012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할때 2008년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2009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 회 신 】

○ 계속비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

- 따라서 위 사업의 경우는 2009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의결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6. 계속비 사업의 명시이월

【 질 의 】

□ 계속비 사업이 2004~2008년까지 5년간 이었다가 중간에 사업내역에 변경사항(시설비와 토지매입비중 시설비가 불용되고 토지매입비만 이월)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기간이 2004~2006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계속비사업액 중 일부를 명시이월이 가능한 지

【 회 신 】

○ 계속비사업은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없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발생으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에 걸쳐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계속비사업에 명시이월은 적용할 수 없음

VI. 지방예산 용어 해설



개산금(概算給)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概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회계행위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반드시 정산이 필요함

예산의 지출은 확정채무(確定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임·용선·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개산급이 인정되고 있음

개산급은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 도래전에 지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금급과 같으나, 성립된 채무의 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다름



계속비(繼續費)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부동산교부세 (不動產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

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예산간주처리 (豫算看做處理)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서, 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법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실무의 예산 편성·집행상 용어임

즉,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일단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보고시 최종예산으로 보고함



예산공개 원칙 (豫算公開의 原則)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으로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함

예산공개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 내용을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예산의 고시 (豫算의 告示)

예산의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전체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상 공개란 고시와 다르게 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난회계연도 지출 (—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당겨사용은 당해회계연도내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이내에 집행)되며 당해연도 세입의 부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익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서 제출하는 것임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